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14
----------	-----------

제출년월일	2014. 02. 24.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안이유

○ 201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 용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

○ 기금조성 목표액 200억원,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 출연 의무 규정 삭제함

나. 이자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

다. 용자조건 및 용자한도액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① 운영자금의 용자한도액 변경(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② 시설자금의 용자조건 변경(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라.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제3조)

- 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용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용자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용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4. 1. 10. ~ 2014. 1. 31.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기금구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를 “기금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를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사업 자금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제7조제1항 중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용자금의 이차 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용자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용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생략) ② <u>기금조성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u>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u>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회계연도마다 10억원 이상 출연하여야 한다.</u></p> <p>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 ③ <u>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u> 1.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원 2. 제12조에 따른 이차액 보전금 지원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p> <p>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u>기금에서 용자하는 재원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연도마다 적립되는 기금 조성액과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한다.</u> ② (생략)</p>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 ① ~ ② (생략) ③ <u>제7조제2항의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조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자부담 보험료 일부지원 2.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사업에 지원된 용자금의 이차액 보전 3. 농산물의 가격폭락에 따른 경영안정 대책비 지원</p>	<p>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u>기금은</u>----- -- 1. ----- 2. ----- 3. ----- ③ -----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제4조의2(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8조제1항에 따른 용자사업 자금 2. 제8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지원 3. ----- -----</p> <p>제7조(용자 및 보조사업 재원) ① -- ----- ----- ---기금의 이차수입----- ----- 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용자 및 보조지원 대상사업 및 용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 <삭 제> 2. ----- -----</p>

현 행	개 정 안
<p>4.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안정과 경영유지비 지원</p> <p>5.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된 사업</p>	<p>4. ----- -----</p> <p>5. ----- -----</p>
<p>제11조(융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융자 한도액은 시설자금 5천만원 이하,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은 <u>1천만원</u> 이하로 지원한다.</p> <p>②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출금리는 규칙으로 정한다.</p> <p>1. 시설자금은 <u>3년 거치 5년 균분상환</u></p> <p>2. 생산에 따른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p> <p>③ ~ ④ (생략)]</p>	<p>제11조(융자 및 보조지원 조건) ① --- ----- -----<u>3천만원</u>----- -----</p> <p>② ----- ----- -----</p> <p>1. -----<u>2년 거치 3년 균분상환</u></p> <p>2.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 <u>군수는 기금관리수탁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한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한다.</u></p> <p>② <u>이자차액 보전재원은 기금 이식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기금에서 충당한다.</u></p> <p>③ <u>이자차액 보전금리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삭 제></p>